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 청약서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주) 한국지점 귀중

1. 본인은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주) 한국지점(이하 "회사")과 아래의 내용에 따라 권리보험을 청약 함에 있어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 보통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을 청약합니다.

2. 본인은 이 청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청약서 앞면 상 "꼭 알아야 할 사항", 청약서 뒷면 상 "유의사항" 및 "보통약관 주요내용" 포함)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권리보험 청약 시 해당 상품설명서를 교부 받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자필작성)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 보험계약자(대리인) (서명/인)

1. 보험계약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2. 피보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3. 보험가입금액(취득가액)				
4. 보험시기	잔금일 또는 증권발행일로부터 보험의 효력 발생			
5. 보험의 목적	목적부동산의 표시	(건물)		
		(대지)		
	원소유자 (매도인)	소유권취득자 (매수인)		
	소유권이전일/원인	년 월 일자 <input type="checkbox"/> 매매 <input type="checkbox"/> 경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꼭 알아야 할 사항

■ 보험에 가입할 때

- 청약시 약관은 청약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관은 보험증권과 함께 교부됩니다.
- 보험료는 청약의뢰 시 납부하며, 반드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료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권리조사 비용(11,000원)은 보험료가 아니므로, **철회 시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청약서 제출 후 보험증권이 교부될 때, 권리조사 비용은 보험료에 **충당**됩니다. **보험계약자(대리인)** (서명/인)
- 권리조사에 따른 청약의 승낙, 거절, 철회 및 보상관련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보상의 예외 포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를 전제로 소유권 등기 예정의 경우 잔금일, 소유권 등기 완료의 경우 증권발행일에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보험에 가입한 후

- 보험증권을 받으시면 청약서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서 기재사항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또는 다른 보험에 가입할 경우 회사에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서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밟으셔야 합니다.

■ 청약율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http://firstam.co.kr>)에서 청약철회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유선(☎ 02-3144-2470)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성명:	(서명/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성명:	(서명/인)
법정대리인(친권자)관계() 성명:	(서명/인)
법정대리인(친권자)관계() 성명:	(서명/인)
< 법정대리인(친권자) 1 인이 서명한 경우 >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 인과 합의하여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서명)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유의사항]

1. 가입자는 청약서 작성시 꼭 알아야 할 사항과 보통약관의 주요내용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은 계약체결 여부와 손해를 부보하는 중요사항이므로 피보험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권리보험은 일반 보험과는 달라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권리의 하자 이외에는 일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험료의 납입은 회사에 직접 송금을 하거나,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주) 한국지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납부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보통약관 주요내용]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의 전체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약관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요부분을 발췌 하였습니다.

제19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함)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약서에 명시된 권리조사 비용을 제외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대출계약철회와 관련하여 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는 반환하여 드리지 않으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기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개시일을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아래의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바와 달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래 각 목의 사유에 의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 가.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서류(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를 위조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나. 매도인의 신분에 관한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등)를 위조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다. 매도인이 자기·강박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라. 의사무능력(매도인 본인 이 정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정신력 능력 또는 지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으로 인해 그 법률행위가 무효에 해당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마. 행위무능력(매도인 본인이 단독으로 권리나 의무를 자신의 행위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바. 무권대리(매도인의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의 매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사. 법인(회사, 조합, 신탁, 기타 법인 및 단체 등)의 적법한 수권(법인을 대신하여 일정한 자격, 권리, 권한 등을 법인의 대리인에게 부여) 없이 이루어지는 소유권의 이전이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2.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3. 목적부동산의 감금지급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까지의 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보다 우선하는 권리(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등기부상 등록되는 권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4. 등기공무원의 등기 오류 및 하자 있는 사법이나 행정 절차로 인하여 소유권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5. 권리조사의 하자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소유권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② 회사는 또한 보험증권상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과는 별도로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의 목적인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 각 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 비용, 경비 또는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피보험자의 청약을 대리하는 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2. 보험개시일자 이후에 발생한 권리제한
 3. 정부 또는 행정당국에 의한 제한, 규제, 금지하는 법령(건물 및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법령을 포함) 및 법률 위반에 따른 손실 및 손해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목적부동산에 대한 점유, 사용 또는 이용에 대한 사항
 - 나. 목적부동산 중 기존의 정착물이나 장래에 설치될 정착물의 특성, 면적 또는 위치에 대한 사항
 - 다. 소유권의 대상인 목적부동산의 분할, 면적 변경 또는 필지의 면적 변경에 대한 사항
 - 라.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
 - 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등과 관련된 사항
 4. 법령에 따른 목적부동산의 수용, 환매, 몰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권한행사 제한과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5.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목적부동산의 하자, 제한, 부담, 불리한 청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제한으로서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
 - 가. 보험금 청구인이 설정, 부담, 인수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에 동의하여 발생한 권리제한
 - 나. 보험금 청구인은 알고 있으나, 회사는 알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의 보장이 개시되는 일자 이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권리제한
 - 다. 보험금 청구인에게 결과적으로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권리제한
 - 라. 보험금 청구인이 목적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가액 지급을 완료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권리제한
 6. 파산, 화의, 회사정리,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 권리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생한 청구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의해 취소되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7. 공적기록에 등록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용수권 또는 용수에 대한 청구 및 권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8. 산림, 광물, 석유, 가스 및 탄화수소 등 천연자원에 대한 청구나 권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9. 대한민국 이외의 장소에서 제기하거나 주장하는 소유권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10. 전쟁, 폭동, 혁명, 내란, 사변, 테러, 소요, 정부조치, 국유화, 천재지변 및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며 회사의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이와 유사한 사유로 발생되는 손실 또는 손해
 11.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임금채권, 퇴직금청구권, 산업재해 보상청구권 등 각종 사회보험료 청구권과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12. 대한민국 통일에 따른 소유권 회복 청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 ② 아래 각 호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 또는 손해는 이 약관의 부모 범위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경비 또는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공적기록상 보험개시일자까지 등재되어 있지 않은 목적부동산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금 및 부과금에 따른 손실 또는 손해
 2. 공적기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목적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나 그 점유자에 대한 질의를 해야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나 민법 제245조에 의한 취득시효 등의 사항, 기타 사실, 권리 및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3.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권, 지상권, 부담 및 기타 사항으로서 공적기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4. 공적기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측량조사를 해야 확인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불일치, 경계선의 상충, 면적의 부족, 부동산에 대한 침범이나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5. 공적기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법령상 이미 부여, 부과 되었거나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와 민법 제320조에 의하여 채권변제의 목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장차 부여, 부과 될 용역, 노후 및 물품 관련 제한이나 권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6. 보험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주) 한국지점
지점장 최명석